

국제해양수산정보

편집실

■ 2005년부터 해상에서도 이동전화 사용가능

- 해양부, 이동통신 3社에 요청....1,200만명 해상 휴대폰 이용
 - 이르면 2005년 초부터 선박용 해상중계기가 설치돼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해상에서도 무선통화가 가능해진다.
 - 해양수산부는 최근 휴대용 전화기의 해상용 중계기 설치를 위해 이동통신 3개사에 중계기를 조기에 보급해줄 것을 요청해 일부사업자는 이르면 2005년 초부터 설치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.
- 선박용 해상중계기가 보급되면 육지에서 최장 95km 떨어진 해상까지 통화권이 확보된다.
 - 이 경우 연근해 어선과 여객선, 관공선 등 선박 약 9만척과 연안여객선 이용객(연간 1,000만명) 및 선상낚시 이용객(150만명) 등 해상교통을 이용하는 1,200만명이 해상에서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.
 - 해양부는 해상에서 자유롭게 이동전화가 사용될 경우 해상종사자 및 해양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해난사고 발생 등 유사시 안전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- 해양부는 지난 6~7월 2개월 동안 연안여객선, 어선, 국가지도선을 이용해 1,297회에 걸친 시험통화를 거쳐 우리나라 연안 해상에서의 육상이동전화 통화실태를 자체적으로 조사·분석한 자료를 이동통신 3개사에 제공했다. 또 정보통신부와 이동전화 통화거리 확장을 위한 협의를 하는 등 해상중계기 설치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.
- 해양부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'해상전용 기지국' 설치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전국 49 개소의 유인등대부지 등 해양수산 시설 사용 협조를 요청해온 경우 이를 적극 검토·지원할 계획이다.

■ 기상악화시 선박 입출항 '원 웨이 방식' 도입

- 해양부, 해상교통 관제 및 도선제도 혁신 방안 발표
- 기상악화시에는 항만내에서 선박의 입출항 시 '원 웨이 방식'이 도입되고 혼잡시간대에는 입출항 선박순위제가 실시된다.
- 또 도선선박이 대형화되고 첨단장비가 갖춰지는 등 도선서비스가 개선되고, 항법 및 속도 위반, 불법어로행위 등 그동안 관행시 돼 온 해상교통 위반행위에 대한 법집행도

강력해진다.

- 해양수산부는 해상교통관제(VTS) 및 도선 서비스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기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‘해상교통관제 및 도선제도 혁신방안’을 마련하여
 - 항해사 등 선박운항자의 인적과실에 따른 위험상황을 모니터링해 해상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해상교통관제 및 도선부문에 있어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.
 - 이를 위해 우선 국제해사기구(IMO)와 국제 항로표지협회(IALA)에서 권고하는 국제인증교육프로그램을 마련, 국제적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해상관제요원을 확보·양성하기로 했다. 이와 함께 도선사의 자질 향상 및 도선시스템 구축을 통해 최고의 도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.
- 선박입출항 운항방식도 바뀌어 기상악화나 시계제한시에는 ‘원 웨이’ 운항방식을 도입,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혼잡시간대에는 ‘입출항선박 순위제’를 실시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.
 - 또 관제구역을 세분화해 정확도를 높이고, 위험화물 운반선과 여객선 등에는 집중·추적관제를 실시하게 된다.
 - 이밖에 선박통행량이 폭주하는 항만에는 우선 해경인력을 지원받아 합동관제를 실시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상교통안전의 취약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·개선하는 등 유관기관간 협조체제도 강화된다.
 - 해양부는 “대부분의 해상교통사고가 연해 구역(66%)에서 발생하는 점을 감안, 점진적으로 광역 연근해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진항만 수준에 걸맞는 관제 및 도선능력을 확충해 나갈 방침”이라고 밝혔다.

■ 최고 25노트 이상 고속선에 FRP 재질 사용 안돼

- ‘고속선기준’ 개정, 2004년 11월 5일부터 국내항해 고속선에 적용
 - 앞으로 국내만을 항해하는 고속선(최고속력 25노트 이상) 건조시에도 화재에 취약한 FRP재질의 사용이 금지돼 불연성 재료인 강이나 알루미늄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.
 - 해양수산부는 해상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종전에 임의 적용하던 해양인명안전협약(SOLAS)의 국제고속선기준(HSC Code)을 수용, ‘고속선기준(10월6일 고시)’을 개정해 2004년 11월 5일부터 강제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.
- 해양부는 또 국내항해 고속선에 대해 복원성(파도에 배가 기울었을 때 원위치로 복원되는 정도) 판정시 종전 국제기준을 적용하던 기상기준을 국내기상여건을 감안해 완화하고 자동차용 안전벨트 사용을 허용했다. 이와 함께 모형인간을 사용한 동적의자시험을 면제하는 등 국제고속선 기준을 일부 완화해 국내실정에 맞게 고쳤다.
 - 부력확보를 위해 각종 출입문이나 화물창 입구 등으로 해수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준도 구체적으로 정했다. 아울러 선체가 2개인 쌍동선의 복원성 기준을 신설했으며 충돌시 위험을 고려해 배 앞부분에 거주구역 설치금지 등을 규정한 2000년도 국제고속선기준을 수용해 적용키로 했다.
- 해양부 관계자는 “주 5일 근무에 따른 해상관광객 증가에 발맞춰 고속선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고속선을 이용한 해상여행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■ 2005년부터 불꽃감지화재탐지기 선박에 사용

- 선박화재예방 강화, 사람과 선박 안전 증진
 - '불꽃감지식화재탐지기' 등 16개 선박용 신제품에 대한 성능시험(형식승인시험)기준이 새로이 마련돼 이를 물건을 보다 쉽게 선박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. 또 '구명정' 등 5개 선박용물건에 대해선 국제규정에 적합하도록 시험기준이 개정됐다.
 - 해양수산부는 12월 17일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는 선박용물건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산 선박용물건의 국제적 유통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'선박및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시험및검정에관한규정'을 개정해 2005년 1월부터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.
 - 이에 따라 기존 화재탐지기의 경우 연기나 열을 통해서만 선박화재를 감지할 수 있었으나, 앞으로는 보다 다각도에서 화재발생을 감지할 수 있는 불꽃감지식화재탐지기를 선박에 설치할 수 있게 돼 화재예방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.
- 또 선내 매트리스도 기존 매트리스보다 위생적이고 안락한 공기식매트리스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선원과 여객이 보다 편안하게 선박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. 공기식매트리스는 비상시 부력재로도 활용할 수 있다.
 - 해양수산부는 선박용물건을 선박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능시험을 거쳐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 성능이 개선된 신제품을 포함해 형식승인 대상 선박용물건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인명과 선박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.

■ IMO 식별번호 선사 및 선주에도 부여

- 2006년부터 적용, 국내 선사 대응책 마련 시급 국제해사기구(IMO) 제79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2004년 7월 1일부터 국제적으로 발효돼 시행중인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 규칙(ISPS Code)의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간 선박에만 부여해 오던 고유 식별번호(IMO No.)를 2006년 7월 1일부터는 선박회사 및 등록선주에게도 부여토록 결정됐다.
 - 이에 따라 100톤 이상 여객선 및 300톤 이상 화물선을 운항하는 외항선사(11개 외항여객선사, 84개 외항화물선사)와 내항선사 중 한정면허를 발급받아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업체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.
 - 이번 결정으로 UN 해양법에서 명기하고 있는 선박과 기국(旗國) 정부간의 진정한 연계(Genuine link)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선박운항자 또는 소유자 정보에 대한 투명성 확보로 테러단체로부터의 불법자금 유입 차단 등 해상보안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.

■ 침수로 인한 선박 손실 사전 예방

- 500톤이상 산적화물선에 '침수경보장치' 설치 강제화
- 해양수산부는 침수로 인한 선체 절손이나 침몰을 방지하기 위해 500톤이상의 산적화물선에 '침수경보장치' 와 '배수펌프장치' 의 설치를 강제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'선박기관기준'을 개정, 2004년 11월 19일 자로 고시했다.

- 신조선은 기준 고시 3개월 이후부터, 현존 선은 기준 고시 3개월 이후(시행일) 첫 번째 도래하는 정기 검사일부터 이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된다.
 - 산적화물선은 광석, 석탄, 곡물 등과 같은 건화물(乾貨物)을 실어나르는 선박으로 화물창 침수시에 선체가 부러지기 쉬운 단점 을 갖고 있다.
- 이번에 설치가 강제화된 침수경보장치는 수위감지기와 가시가청경보장치로 구성돼 있으며 일정수위가 되면 자동적으로 경보를 발하도록 고안돼 있어 선체 손상 등으로 인한 화물창 침수시 사전에 침수사실을 감지해 물을 배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이번 조치는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(SOLAS)의 개정사항을 수용한 것이다.
 - 해양부는 특히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소유자는 외국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정된 규정을 숙지하고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
 - 해양부 관계자는 “이번 선박기관기준 개정으로 화물창 침수로 인한 산적화물선의 절손 및 침몰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”며 “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 침몰에 따른 유류 유출로 인한 환경훼손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 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- 자료는 www.momaf.go.kr에서 발췌한 것입니다.